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
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이성수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67호로 2023년 5월 26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, 지원 수단의 다양화와 지원금액의 상향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원활한 교통요금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(안 제4조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6. 7.~ 6. 11.)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현행 조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나, 지원 수단의 다양화와 지원금액의 상향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원활한 교통요금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

### ○ 주요 개정내용으로

- 안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“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”에서 “대중교통요금 등”으로 개정하였음.

### ○ 검토결과

-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함에 따라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대비 약 61% 증가한 368만 2,632명으로 고령운전자 또한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.
-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021년에 발표한 ‘고령 운전자의 운전행태분석 및 정책개발 연구’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대비 약 35% 증가한 3만 1,072건으로 증가 추세이며, 2020년 기준 전체교통사고의 사망자수(3,081명)에서 고령운전자 가해 사망자 수(720명)는 약 23.4%로 사망사고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‘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’에서 ‘대중교통요금 등’으로 개정하여 반납자들의 요구에 맞춘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

## 도로교통법

**제93조(운전면허의 취소·정지)** ① 시·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(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(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2호, 제3호, 제7호, 제8호, 제8호의2, 제9호(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), 제14호, 제16호, 제17호,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(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),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.

1 ~ 19 (생략)

20.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(失効)시킬 목적으로 시·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. 다만,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.